

## 법무부

## 공보국

긴급 공지사항

2014년 4월 9일 수요일

## 법무부와 뉴저지 사법부, 법정 내 언어지원 서비스 제공 위해 공조

법무부는 오늘 영어 구사능력이 제한적인 (LEP)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언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뉴저지 사법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2014년 4월 7일 자 합의서에서 법무부는 뉴저지 내 2개의 군 소재지 법원이 영어 구사능력이 제한적인 사용자가 법원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법원 이용객들의 항의로 제기된 심리를 종결짓는다고 뉴저지 사법부에 통지했다. 법무부는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수혜기관이 출신 국가를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어 구사능력이 제한적인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1964년 민권법 제 6장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법무부와 뉴저지 사법부 간의 본 합의서는 뉴저지 사법부가 연방정부의 조사 중 제기된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시행한 시정조치와 실천방안을 담고 있으며 뉴저지 사법부가 법원 시스템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언어지원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기울일 노력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실천 방안 중에는 소송 관계자를 위한 통역 서비스와 법정 내 다중 언어 안내 표지판 설치, 제한적 영어 사용자의 일 처리를 돕기 위한 이중 언어자를 위한 키오스크와 사용 안내 동영상, 뉴저지주 전역에서 사용하는 340개 이상의 양식과 책자의 번역, 통지문 번역,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 시 즉석 번역 서비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지역 라티노 사회에서 널리 읽히는 출판물에 광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뉴저지 사법부는 또한 영어 구사능력이 제한적인 (LEP) 모든 사람이 법원의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주 전역에 걸쳐 법원의 이용 문제와 구치소에 통역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민권국의 조세린 사무엘 법무부 차관보 서리는 “뉴저지 사법부는 수년간 통역 관련 정책 분야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그간 뉴저지가 일반인들의 법원 이용면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스튜어트 래브너 대법원장과 글렌 그랜트 임시 총무 부장 판사 및 뉴저지 사법부 직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한다”고 말하고 “특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어 구사능력이 제한적인 관계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주와 현지 법원 지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한다”고 덧붙였다.

본 신고사항은 주 법원이 민권법 제 6장에 명기된 언어지원 요건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인권국 연방조정 및 규정준수과 ([Federal Coordination and Compliance Section \(FCS\)](#))의 조치의 일환으로 처리되었다. 연방조정 및 규정준수과는 주 법원에 정책 지침과 최근에 나온 법정 언어지원 서비스 도구인 [Language Access Planning and Assistance Tool](#) 과 같은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미 전역에 걸쳐 시행되도록 집행한다.

이번 뉴저지 문제는 특별 법무 변호사 크리스틴 스톤맨의 도움으로 니디디 모세스 검사에 의해 처리됐다.

민권법 제 6장과 도심범죄 방지법 ([Safe Street Act](#))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이 문제 관련 문서의 사본은 영어 구사능력이 제한적인 사람들을 위한 사이트인 [the LEP website](#) 에서 구할 수 있다. 이 공지사항의 스페인어 번역본은 법무부 스페인어 사이트인 [website](#) 에 곧 게시될 예정이다.